

# 결정서

사건 : 2015-296 임상해임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REDACTED]

소속 [REDACTED]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피청구인 : [REDACTED] 대학교총장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변호사 오범석

심사일 : 2015. 7. 22.

결정일 : 2015. 7. 22.

피청구인이 2015. 5. 18. 청구인에게 한 임상해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5. 5. 26.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주문

피청구인이 2015. 5. 18. 청구인에게 한 임상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 1. 처분사유

#### 가. 인사발령 내용

소속	직급	성명	발령내용	발령일자	발령기간	비고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REDACTED]	임상해임	2015. 5. 15.	2015. 5. 15. ~ 2015. 8. 14.(3개월)	경주 병원 흉부외과

#### 나. 인사발령 사유: 진료실적 저조

청구인의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성장률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개인별 원가분석에서도 - 80,441,000원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타병원 전문의 1인당 평균 진료실적 대비 진료실적이 단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청구인의 진료 실적 : 타병원 대비 성장률(2010~2014년)>

진료과	성명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비고
		개인 실적	타병 원대 비성 장률									
흉부 외과	■■■■■	564	46%	9	1%	859	70%	705	57%	780	65%	성장률 미약

<청구인의 진료 실적 : 과평균 대비 개인 실적(2010~2014년)>

진료과	성명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비고
		개인 실적	과평균 실적									
흉부 외과	■■■■■	564	637	9	363	859	469	705	667	780	865	성장 률미 약
	■■■■■	711	637	717	363	79	연구년	628	667	930	865	

#### 다. 조치사항

- 환자진료, 수련의 교육 등 미참여
- 진료연구비, 특별연구비, 보직수당 등 미지급
- 임상 재임용시, 임상해임과 동일 절차 진행 후 결정

## 2. 청구인 주장

가. 환자를 보지 말라 명령하는 것은 동국대학교 규정집에 적시되어 있듯이, 당사자의 큰 잘못 때문에 가해지는 징벌적 조치라 판단된다. 임상해

임 조치가 첫째, 교원 지위에 대한 변화가 없고, 둘째, 이사장이 아니라 총장의 전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소청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소청심사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으로 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 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진료를 하지 말라는 명령과 그에 따른 급여의 손실(월 약 300만원)등으로 인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소청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 다른 교수들과 달리 청구인은 “환자 증대가 어려워 보임”이라고 적혀 있는 바, 실제 다른 사람들에게 언급된 “손익 및 공헌이익 저조”라던가, “생산성 저조 및 타 병원 대비 경쟁력 낮음” 또는 “외부활동에 의한 병원 진료 소홀” 혹은 “타 교수의 성장에 역할 미비”등의 지적 사항이 일절 없다.

다. 해외 연수를 다녀온 2011년 실적을 제외하면, 오히려 꾸준히 실적이 향상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진료 실적 금액을 보자면, 2010년에는 5억6천4백만원, 2011년 연수, 2012년에는 8억 5천9백만원, 2013년에는 7억5백만원, 2014년에는 7억 8천만원 등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라. 본인의 최근 몇 년간의 진료실적은 경주병원의 외과계열에서 중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타 병원 전문의 1인당 진료 실적 대비를 보더라도 크게 보면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같이 병기된 교수들에 비교해 보더라도 특별히 낮은 실적이거나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따라서 진료 실적 성장률이 미약하다는 것과 타 병원 전문의 대비 진료 실적이 단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학교측의 답변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

바. 청구인의 이름 상단과 하단에 있는 흉부외과 김○○ 교수와 정형외과 김○○ 교수의 원가분석표를 보면 자세히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이 저보다도 매년 적자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 흉부외과는 크게 심장혈관 수술과 폐, 식도 등 일반 흉곽수술로 나

눌 수 있고, 심장혈관수술은 투입되는 장비와 인원을 생각했을 때, 진료 실적이 무척 커지지만, 그에 따른 원가도 많이 들기 때문에 경주 정도의 작은 도시에서는 구현이 불가하다. 경주 병원 흉부외과는 일반 흉곽수술을 주로 하는 작은 규모의 의국인데도 불구하고, 의료원이 제시한 타 병원 1인당 진료실적은 5개 병원 중 3개 병원이 심장수술을 시행하는 저희 병원 규모의 2배 이상인 병원이다. 타 병원 1인당 진료 실적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청구 인의 실적이 단계적으로 감소한다는 결론은 납득할 수 없다.

아. 연도에 따른 원가 분석상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과거부터 일관되게 환자 위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 3. 판 단

#### 가. 사실 관계

1) 청구인은 2003. 3. 1. █ 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7. 3. 1. 부교수로, 2012. 9. 1. 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다.

2) 피청구인은 2014. 2. 25. 청구인을 2013년 부진교원으로 선정<sup>1)</sup>한 후 2014년 부진교원 관리계획을 통보하였고, 2015. 3. 31. 경주병원 중점관리대상 교원<sup>2)</sup>으로 선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15. 4. 2. 의학계열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진료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해 임상교수 해임을 심의하였고, 청구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2015. 4. 20. 피청구인에게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의학계열교원인사위원회는 2015. 4. 23. 청구인에 대해 임상교수 해임을 의결하였다.

5) 의학계열 교원인사위원회는 2015. 4. 29. 청구인에 대해 임상해임 처분을 제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5. 14. 청구인에 대하여 임상해임 의

1) 선정기준: 비교병원 대비 진료실적이 50% 미만인 교원

2)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은 ① 2014년도 진료과 손익이 하위 20%인 교원, ② 진료과 손익분기점 미만인 진료과 중 2012년도 대비 2014년도 손익개선액이 최하위인 진료과 교원, ③ 교원 개별 손익이 하위 20%인 교원임.

결을 하였다(임상해임기간 : 2015. 5. 15. ~ 2015. 8. 14.).

#### 나. 임상해임의 처분성 인정 여부

1) 피청구인은 임상해임 처분이 의과대학 학생의 교육 외에 환자진료, 수련의 교육 등 임상참여에 제한을 두는 조치여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상의 교원의 신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피건대,

교원이 인사발령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근무조건과 직무의 연속성 및 일상생활의 안정성 등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 볼 수 있고, 대학교수는 강의와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고, 강의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발전시키는 것이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되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인사발령을 내렸다면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러한 인격적 법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참조). 또한 교수와 의사 두 개의 신분을 갖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환자의 진료권을 박탈한 인사발령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된다(서울행정법원 2014. 3. 7. 선고 2013구합59873 판결 참조).

2) 또한 피청구인은 임상해임 처분 이후에도 실제로 교원의 보수에는 변동이 없어 교원의 지위에서 불리한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피건대,

가) 피청구인의 의학계열 교원인사규정은 임상의학교원의 보수를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분하고, 학생교육 등의 교원 신분에 대한 보수는 학교교비에서 지급되며, 의사업무 등에 대한 진료연구비는 임상급여로써 병원수입에서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2015. 4. 2. 의학계열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임상해임은 ‘진료수당 미지급 등의 개인적인 불이익’ 받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5. 4.~ 6.간 청구인의 급여명세서를 비교해보면, 청구인은 실제로 임상해임기간 동안 대학으로부터 지급되

는 보수만 받았고, 병원으로부터 지급되는 진료연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임상해임 기간 동안 월별 수입은 진료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처분 이전 보다 월 평균 약 3백만원 정도의 수입이 줄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보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피청구인의 임상해임은 의사 신분인 청구인을 임상진료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것으로, 임상진료를 통한 교원으로서의 연구 활동 및 의과대학생과 인턴·레지던트와 같은 수련의에 대한 교수권을 제한할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월급여가 감소하게 되어 일상생활의 안정성이 침해되는 등 경제적인 면에서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 다. 처분사유의 인정여부

##### 1) 피청구인 관련 규정

■ 대학교 의학계열 교원인사규정 제38조에 따르면, 의과대학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무부총장(의료원장)의 제청으로 해임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제4호로 ‘임상진료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상교원이 환자를 진료하고, 수련의 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인격권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인정되므로, 임상의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임상해임 처분은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임상해임 사유인 ‘임상진료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자’에 해당하려면, 객관적으로 임상진료 실적이 현저히 저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실적 부진에 대한 충분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2) 청구인의 진료 실적 부진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진료실적 저조로 판단한 근거자료는 ① 타병원 전문의 1인당 평균 진료실적과 대비한 청구인의 진료실적 ②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진료부서의 평균실적과 대비한 청구인의 진료실적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료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비교준거 병원으로 타

행정구역에 소재한 5개 병원(창원○○○, 포항○○, 구미○○○, 침례○○, 창원○○, 원광○○○)3)의 전문의 1인당 진료실적과 비교한 성장률을 산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나) 타병원 전문의 1인당 평균 진료실적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비교로 삼은 병원이 소재한 행정구역은 군포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소재한 병원을 제외하곤,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주에 비해 인구수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다. 청구인에 대한 진료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제공하는 흉부외과의 의료비 급여 비중<sup>4)</sup> 및 피청구인 병원과 유사한 규모의 의료기관의 진료수익과 같은 타당성이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들 병원중 3곳의 경우 흉부외과의 의국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청구인이 소속한 병원 의국규모와 차이가 인정되므로, 잠재적인 환자수와 진료과에 배속된 전문의 수 등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선정한 지역에 소재한 병원의 전문의 1인당 평균 진료실적만을 단순하게 비교한 통계치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적법한 진료실적 부진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 진료실적 부진의 두 번째 근거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료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흉부외과에 소속된 전문의 1인당 평균 진료실적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의 진료과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2명만의 의료진만이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산출한 과평균의 수치와 같은 지표 자료 역시 임상해임 처분 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라) 2015. 4. 2. 의학계열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 환자증대가 어려워 보이고, ‘인적구성 재검토 및 신규인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시하였다. 청구인의 전문분야인 흉부외과는 진료과 특성상 응급실 중심의 외과적 수술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외과계열 진료과 중에서도 병원 수지개선을 위해 환자를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

3) 2014년 기준 피청구인 병원이 소재한 경주의 총 인구수는 264,091명인 반면, 비교로 삼은 병원이 소재한 행정구역의 인구수는(구미 416,949명, 포항 518,913명, 창원 1,091,471명, 군포 286,841명, 부산 금정구 255,692명)

4) 2010~2014년 병원급 이상의 흉부외과가 차지하고 있는 의료비 급여 비중은 1.9%임

로, 진료실적을 높이려는 노력이 오히려 환자입장에선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는 과잉진료행위로 이어질 우려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장기적인 병원의 적자해소를 위해 진료수익을 증대하려는 노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더라고, 단지 청구인에게 수술과 입원환자의 유치실적이 낮아 진료수익을 많이 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진료권을 제한한 임상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있다.

마) 또한 청구인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년 연구년중 이어서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피청구인의 의학계열 교원인사규정 제26조(보수) 제2항 제3조에 의거 청구인은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6개월 이상 타 기관에 파견, 연수중인 교원’에 해당되고,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실적 평가기간으로 반영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오인에 의한 것이어서 임상해임 처분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임상해임 처분 근거로 들은 최근 3년간 타병원의 1인당 전문의 평균 진료실적과 과평균 대비 개인실적에 근거한 지표자료는 타당한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점, 흉부외과의 진료손익 산출구조는 타 진료과와 상당한 차이가 인정되는 점, 흉부외과 특성상 타 진료과목에 비해 의료비 급여 비중이 낮은 점, 진료실적의 저조한 사유가 단지 청구인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임상진료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자’라고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임상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4.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임상해임 처분은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 대상이 되고, 피청구인의 임상해임 처분에 위법성이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동국대학교 의학계열 교원인사규정 »

### ■ 동국대학교 의학계열 교원인사규정

제2조(교원의 종류) ① 의학계열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② 전임교원(이하 “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하며, 복무형태에 따라 기초의학교원, 간호교원, 임상의학교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년트랙 및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제26조(보수) ① 보수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분류하며, 보수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급이라 함은 본봉, 연구비, 보직수당을 말한다.
2. 본봉이라 함은 호봉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말한다.
3. 연구비라 함은 교원의 직위에 따라 연차별로 정해진 급여를 말한다.
4. 보직수당이라 함은 교원이 맡고 있는 보직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말한다.

5. 수당이라 함은 기본급 외에 직무여건, 근무기간, 평가결과 및 기타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② 진료연구비는 임상의학교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인 교원
2.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15일 이상 결근한 교원
3.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6개월 이상 타 기관에 파견, 연수중인 교원
4. 자비연수 및 임상해임 교원
5. 출산휴가 중인 여교원

제28조(보수의 계산) ① 보수의 계산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보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 « 동국대학교 의학계열 교원인사규정 »

③ 진료연구비는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의무부총장(의료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임상해임 대상자) 전임교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임상해임 할 수 있다.

1. 근무에 태만한 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의료원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손상시킨 자

3. 기타 병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자

4. 임상진료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자

제39조(임상해임 절차) 제39조에 의한 해임대상자에 대하여는 의학계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무부총장(의료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해임을 결정하고 범인에 보고한다.

제40조(조치) ① 임상해임자로 확정 및 통보된 자는 환자 진료, 수련 의교육 등 임상참여에 제한을 두며, 의무부총장(의료원장)이 따라 정한다.

② 임상해임자에게는 진료연구비, 특별연구비, 보직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임상해임내용을 교원 재임용 및 승진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

2015. 7. 22.

교 원 소 청 심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성삼제 성삼제

상임위원 류정섭 류정섭

위 원 고영현 고영현

위 원 양일선 양일선

위 원 김동춘 김동춘

위 원 문영기(불참)

위 원 박범덕 박범덕

위 원 김경배(불참)

위 원 김효신 김효신

위 정본임.

2015. 8. 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